[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원문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청원의 취지]

2019년 12월,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유도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구에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등록을 승인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설립 허가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하여 자기 관련성 부족으로 각하처리함으로써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정당의 전략에 의해 선거가왜곡되는 현상을 방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성정당의 정당설립 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성정당의 창당 및 운영을 방지할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대표성 및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위성정당은 기존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동일한 조직, 인력, 재원,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같은 정당의 연장선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의 더 많은 확보를 위하여 위성정당을 설립. 비례

대표 투표에서 위성정당에 투표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위성정당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당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약화시키며, 정치적다양성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위성정당의 설립과 운영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하는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의2 (위성정당) 조항을 신설하여 위성정당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제4조 (성립),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관한 기본 조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위성정당의 등록 신청을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제15조 (등록신청의 심사) 에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적합성 및 위성정당 여부에 대한 심사항목을 추가하여 등록신청 심사 과정에서 위성정당 여부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제45조 (자진해산) 에 위성정당에 대한 해산명령 가능 조항을 추가해 위성정당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법률 개정안은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정당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 ※ 청원의 취지와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청원원문을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청원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 해당 청원원문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